

●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04. 3.25 조례 제613호
개정 2006. 4.20 조례 제703호
개정 2009.12.31 조례 제834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4.20)

제2조(법인격)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,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, 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임·직원에 관한 사항
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11. 공단체 발행에 관한 사항
1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13. 기타 필요한 사항

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설립등기)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.

제2장 임원 및 직원

제7조(임원)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

조례

및 감사로 하며, 그 인원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·12·31]

제8조(이사장) ① 공단의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06·4·20, 2009·12·31)
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.

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, 비상임이사는 구의 사업감독 부서의 장(국장)과 예산부서의 장(국장),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,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09·12·31)

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

제10조(감사)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09·12·31)

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
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.

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9·12·31]

제12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09·12·31]
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
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7.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
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14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구청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15조(이사회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 (개정 2009.12.31)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09.12.31)

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16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
[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17조(비밀누설 금지 등)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[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18조(이사회에의 참여제한)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[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19조(직원의 임면)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되, 임용은 시험성적,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3장 사업 (종전 제4장에서 이동 2009.12.31)

제20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조례

1. 주차장 관리사업
2.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
4. 기타 구청장이 위탁·지정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

[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09·12·31]

제21조(사업의 대행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[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09·12·31]

제22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 (개정 2006·4·20, 2009·12·31)

[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09·12·31]

제4장 재무회계 (종전 제5장에서 이동 2009·12·31)

제23조(사업연도)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[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09·12·31]

제24조(회계원칙 등)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09·12·31]

제25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,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[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09·12·31]

제26조(수입 및 정산)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충당

한다.

1. 구에서의 전입금
2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
3. 기타 영업외 수입 등

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,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[중전 제33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27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구 세입에의 납입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.

[중전 제34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28조(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) ①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
2.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
3. 기타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

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[중전 제35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29조(재산의 사용 등) ① 구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구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[중전 제36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30조(기금조성 등)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.

[중전 제37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제31조(결산)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[중전 제38조에서 이동 2009.12.31]

조례

제32조(단기차입금 등) 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 할 수 있으며,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.

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5장 감독 (종전 제6장에서 이동 2009-12-31)

제33조(감독)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 및 퇴직금규정(명예 퇴직규정 포함)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
3.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

[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34조(보고 및 검사 등)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[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35조(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)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,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36조(업무상황의 공표)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가결과,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,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6장 보칙 (종전 제7장에서 이동 2009-12-31)

제37조(권한의 위탁)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38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

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구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(개정 2009-12-31)

② 파견된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국·과소 담당관과 동일하게 평정한다.

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[중전 제45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39조(공인의 비치) 공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성동구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

[중전 제46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40조(과태료) ①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[중전 제47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제4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48조에서 이동 2009-12-31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시의 출자액) 공단설립당시 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6억원 으로 한다.

제3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(2006·4·20 조례 제70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9·12·31 조례 제83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